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104

발의연월일: 2022. 12. 23.

발 의 자:정희용・구자근・김영식

박덕흠 • 양금희 • 윤창현

임이자 · 정우택 · 주호영

최춘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생활의 변화와 고령화, 도시화 등으로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인식에 높아짐에 따라 등산 등 건기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.

이러한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·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·관리가 필요한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국가숲길 제도를 도입하였음.

그러나 국가숲길 지정 후 운영·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가숲길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·관리가 어려운 실정임. 따라서 국가숲길 운영·관리·위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품격있는 국가숲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23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3조의4를 제23조의5로 하고,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23조의4(국가숲길의 운영·관리 등) ① 산림청장은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숲길에 대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- ② 산림청장은 국가숲길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등산·트레킹지원센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국가숲길의 운영·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숲길의 운영·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·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5조제4항제2호 중 "제23조의4제1호"를 "제23조의5제1호"로 한다. 제38조제3항제3호 중 "제23조의4제3호"를 "제23조의5제3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제23조의4제4호"를 "제23조의5제4호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숲길 운영·관리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청장으로부터 국가숲길 운영·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숲길 운영·관리 업 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3조의4(국가숲길의 운영·관리
	<u>등) ① 산림청장은 제23조의3</u>
	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숲길
	에 대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
	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·관리하
	<u>여야 한다.</u>
	② 산림청장은 국가숲길의 효
	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
	요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
	에 따라 설립된 한국등산·트레
	킹지원센터 또는 농림축산식품
	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
	시설을 갖춘 기관에 국가숲길
	의 운영·관리를 위탁할 수 있
	<u>다.</u>
	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
	국가숲길의 운영·관리를 위탁
	한 경우에는 그 운영·관리에
	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
	를 지원할 수 있다.
제23조의4(숲길 주변에서의 금지	제23조의5(숲길 주변에서의 금지
행위) (생 략)	행위) (현행 제23조의4와 같음)

제35조(벌칙) ① ~ ③ (생 략)	제35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4
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	
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	
에 처한다.	<u>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23조의4제1호</u> 또는 제2호	2. 제23조의5제1호
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	
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	
물·농작물, 그 밖의 재물을	
손괴한 자	
⑤ · 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38조(과태료) ① · ② (생 략)	제38조(과태료) ① · ② (현행과
	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3
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제21조의6제2호·제3호 및 <u>제</u>	3 <u>제</u>
23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금	<u>23조의5제3호</u>
지된 행위를 한 자	
4. 제23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	4. <u>제23조의5제4호</u>
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	
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	
가뜨린 자	
5.·6. (생 략)	5.·6. (현행과 같음)